

경력평정의 확인자(제14조 관련)

위원회별	직급별	확인자
중앙	5급 및 6급	인사과장
	7급 이하	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
시·도 및 구·시·군	5급 및 6급	인사과장
	7급 이하	총무과장(시·도)